

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갱신형)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갱신형)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4년 3월 21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갱신형)

1. 보험종목의 명칭

명칭	세목	
무배당 ①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갱신형)	1 종	순수보장형
	2 종	만기지급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납	만 15세 ~ 60세	월납
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25세 ~ 64세	월납
	80세만기	전기납	65세 ~ 74세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제 2회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표준이율(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체결시점,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한다)로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약관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1)'에 따라 갱신한다. 다만, 이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 (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5)'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나) 약관 제24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 (4) '(1)' 및 '(2)'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최초계약의 보험종목(1종(순수보장형) 또는 2종(만기지급형)) 및 보험기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 80세만기로 갱신한다.
- (5)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80세 계약해당일로 한다.
- (6) '(1)' 및 '(2)'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 다만,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한다.
- (7)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한다)을 보장 개시일로 한다.
- (8)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재계산한다.
- (9)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 (10)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한다.
 - (가) '(3)'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사유
 - (나) '(6)'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다) '(8)' 및 '(9)'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 (11)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가입나이, 가입년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